

광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5873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587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50626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정나나

피고, 피항소인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변론 종결2019. 4. 19.

판결 선고2019. 5. 24.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50626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C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선지급받았음에도 자금을 유용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노무비, 장비대 등)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는 그 진행이 수차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20.경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재차 중단되었는데, 당시 C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의 예상소요기간이 85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인 2017. 2.경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 T은 2016. 12. 26. C의 사장 U과 이사 V을 공사현장으로 불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U과 V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T은 C과 더 이상 공사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U에게 '이제부터 공사에서 빠질 것'을 통보하였고, U은 위 통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등을 철수시키겠다'고 답하였다. U의 위와 같은 말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다.

라.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에서 규정한 약정해지권에 근거한 원고 측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6. 12. 26. 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다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17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가 'C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C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C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먼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9. C에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C이 부담하여야 한다.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의 선금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답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을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 제2항의 계약이행의 서면최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실시한 위 법리에 따라 C이 원고의 해지통보 이전에 미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C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2016. 12. 20.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2016. 12. 26. 및 같은 달 29. 구두 내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한 해지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재현

판사오형석

판사강성대

1) 원고는 2019. 3. 12.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진술(당심 제2회 변론기일)을 통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